

건설산업기본법 공청회

「건축설계」는
「건설산업기본법」에
통합될 수 없다

Give a Flat Contradiction to
Construction Industry-Basic Law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건설업의 경쟁력제고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건설교통부가 입법 추진중인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해 각계의 여론을 수렴기위한 공청회가 국토개발연구원의 주최로 지난 8월 6일 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추병직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의 주제발표와 함께 국토개발연구원 이규방 부원장의 사회로 장시간에 걸쳐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는데, 토론자로 참석한 우리협회 이관영 이사와 중앙대 김수삼 교수 현대경제연구원 이재우 박사, 쌍용건설 남충희 박사, 한국경제신문 신영섭 논설위원을 비롯해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설비공사협회·전기공사협회·소방안전협회 및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업계가 모두 참가해 새 법안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이번 건설산업기본법(안)에 대해 우리협회는 물론 전기·소방·설비·관련업계에서는 건설업과는 별개인 각 분야의 특수성을 들어 건설업의 일종으로 통합될 수 없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새 법안의 해당업역을 제외시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법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 협회는 「건축설계」 분야를 「건설업」의 범주내에 포함시키므로써 창작행위를 산업적 시각으로 보아 창의성, 작품성, 공공성보다는 경제성, 기술력, 상업성이 우선하는 획일적 경제논리로 다루는 데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건축설계의 창의성, 공공성에 대한 논란은 산업경제 논리와 구별하여 문화적인 관점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건축설계」 분야를 건설시공업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깊은 건설업법내에 포함시키는 것은 자칫 건설업체들이 주장해온 「건설분야」의 잠식의도에 빌미를 제공하게 될 뿐 아니라 일부 법조항을 확대 해석 또는 악용함으로써 본래의 개정의도에서 벗어나 건설업체의 업역독과점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음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건설산업기본법(안)은 건설업에 관한 현행 법체계가 건설업법 외에도 건설공사의 종류에 따라 13개 법률에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소관부처만도 6개 부처로 다원화 되어 있는데 따라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일반국민이나 건설업자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부실방지대책과 국제화 시대에 대비한 체질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건설관련 정비에서부터 건설제도 면허의 혁신, 도급한도제도의 폐지, 공사현장 실명제도입, 건설분쟁중재원설립, 공제조합법통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밝힌 본 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입법예고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